

『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7년 8월 16일

##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###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# 1. 제안이유

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수년째 동결되어 있는 바, 현재 월 5만원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수당지급액을 현재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함.(안 제5조제2항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5일(금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(참조: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22, 팩스 032-440-8764, 이메일 [teasugar@korea.kr](mailto:teasugar@korea.kr)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| 제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조항 | 찬반여부 및 사유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|
| ○ 주 소 :<br>○ 성 명 :<br>○ 연락처 : |       |           |    |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나. 비용추계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2항 중 “월 5만원”을 “월 10만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 행       | 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5조 (참전명예수당 등) ①(생략) | 제5조 (참전명예수당 등) ① (현행과 같음) |
| ② 수당 지급액은 월 5만으로 한다. | ② ----- 월 10만-----<br>--  |

## 관계법령 발췌사항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관계법령         | <p>■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(참전명예수당)</p> <p>■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6조 제26조(협의 및 조정)</p> <p>■ 「사회보장기본법 동법시행령 제14조 ~ 제16조</p> <p>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</p> |
| 관련법규<br>정비대상 | “해당사항 없음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관련자료         | “해당사항 없음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□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**제6조(참전명예수당)** ①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. 다만,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(이하 "수당지급 대상자"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.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
2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
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

②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 다만,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.

③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[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(이하 "체신관서"라 한다) 또는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의 계좌를 말한다. 이하 같다]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. 다만, 정보통신망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.

⑥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를 준용한다.

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(月額)으로 지급하며,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□ 사회보장기본법

**제26조(협의 및 조정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,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, 기존 제도와의 관계,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.

## □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

제14조(협의 운용방안)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의 대상기준, 절차 등 세부 운용방안(이하 "협의 운용방안"이라 한다)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5조(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)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업 대상, 지원 내용,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
2.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근거에 관한 사항
3.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
4.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필요한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

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(물가상승률, 최저보장수준,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 매년 4월 30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"신설"은 "변경"으로 본다.

1. 소득, 재산, 연령, 자격 등 대상자 선정기준
2. 국고보조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
3. 그 밖에 급여 내용, 전달체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,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와의 관계,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이후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된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

한다.

-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운용방안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설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업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⑦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6조(협의결과의 처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운용방안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.
 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·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, 기획재정부장관, 행정자치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

【붙임 2】

## 비 용 추 계 서

### 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제5조(참전명예수당 등)
  - ② 수당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한다.

### 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국가보훈처 등록 참전  
유공자는[19,500명]로 월 10만원으로 전제함  
※ 참전유공자의 고령으로 매년 사망자 500명(추정)

나. 추계 결과

(단위 : 천원)

| 항 목    | 2018년      | 2019년      | 2020년      | 2021년      | 2022년      | 계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참전명예수당 | 23,400,000 | 22,800,000 | 22,200,000 | 21,600,000 | 21,000,000 | 111,000,000 |

다. 재원조달방안 : 시비(100%)

※ 근거 : 조례 제3조 제2항

### 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### 4. 작성자 : 보건복지국 다문화보훈봉사과장 최충현